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서울특별시(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04-83-00469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02-2133-8084)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별첨 참조	10 m	76 mm	시추조사
	착공 예정일 2021년 05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2021년 06월 일		
	예정 시공 업체명 (주)테크피아		대표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이노밸리B동 1004호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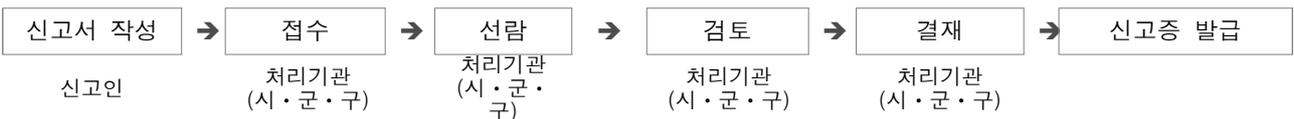
2021년 5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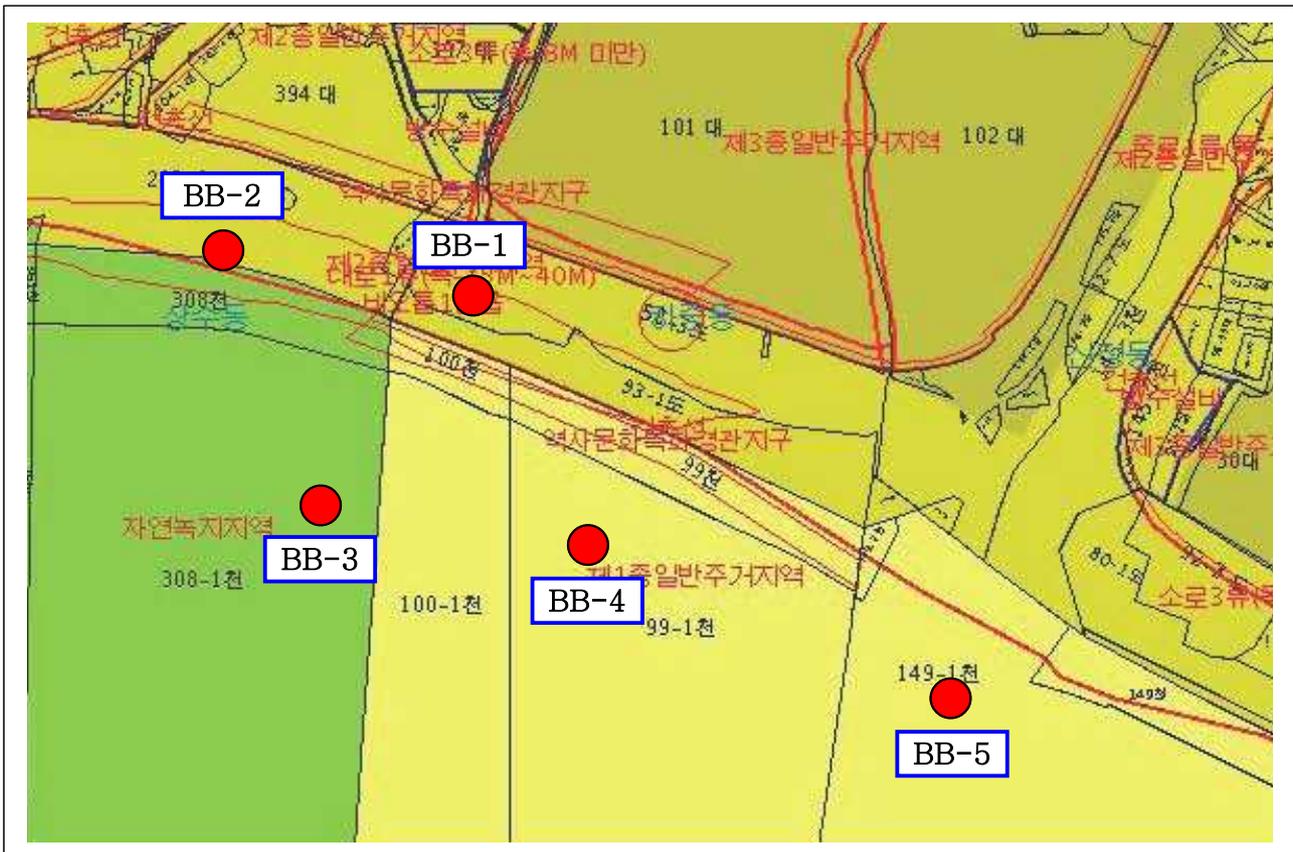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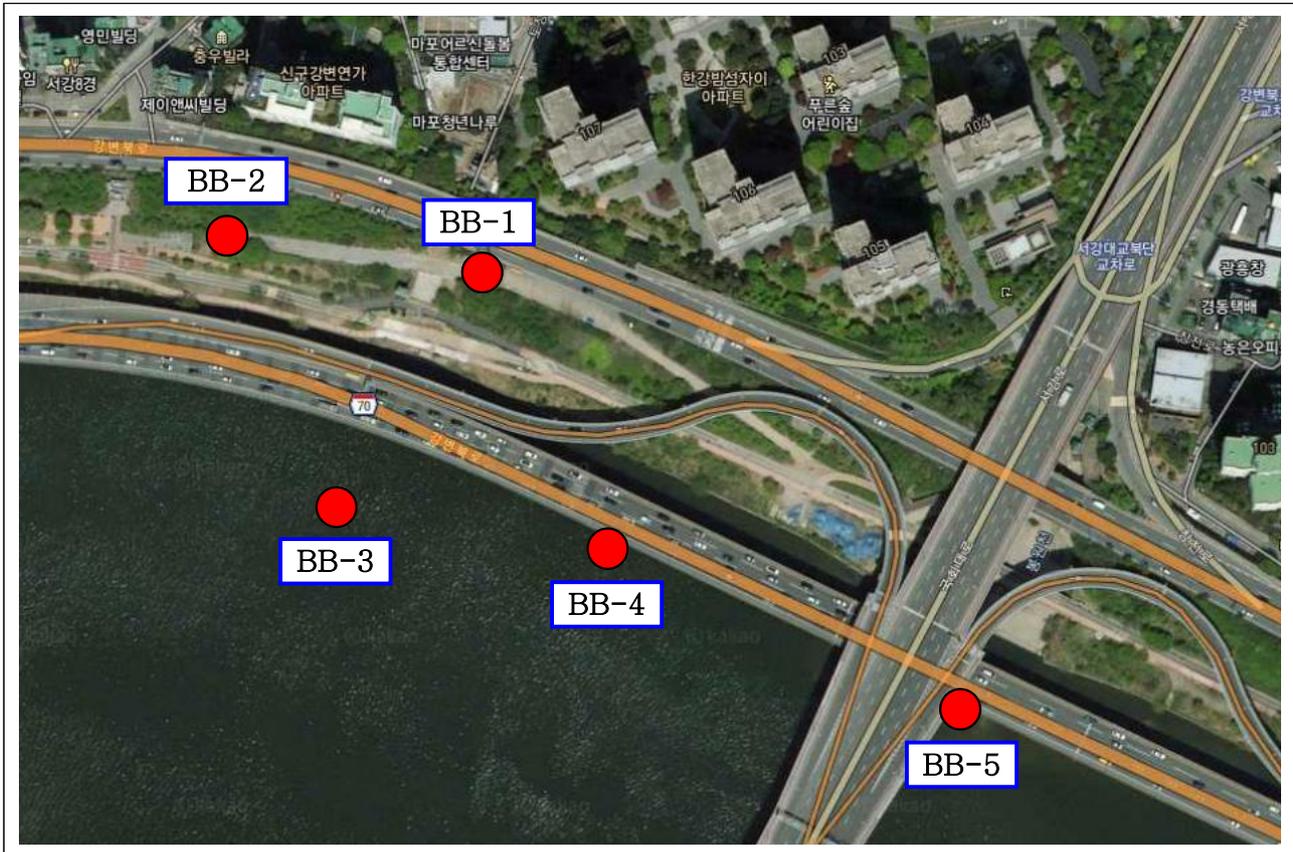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별첨 1. 굴착행위 위치도

순번	공번	지번	지목	소유자	좌표		굴착깊이 (m)	굴착지름 (mm)
					위도	경도		
001	BB-1	서울시 마포구 하중동 58-3	도로	서울특별시	37°32'39.19"	126°55'37.50"	10	76
002	BB-2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283-2	도로	서울특별시	37°32'39.62"	126°55'33.70"	10	76
003	BB-3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308-1	하천	국	37°32'36.82"	126°55'35.09"	10	76
004	BB-4	서울시 마포구 하중동 99-1	하천	국	37°32'36.11"	126°55'39.20"	10	76
005	BB-5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 149-1	하천	국	37°32'34.09"	126°55'44.81"	10	76



별첨 2. 원상복구(폐공) 계획서

원상복구(폐공) 계획서

1. 시추공 폐공처리 목적 및 조치사항

- 폐공처리 목적
 - 지하수 오염방지
 - 폐공처리에 의한 지하수 오염방지 효과
 - 폐공내로 유입되는 지표오염원의 차단
 -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통로 제어
 - 오염 유발시설(케이싱 등) 제거
- 조치사항
 - 폐공처리 명문화 : 폐공관리통합지침(건설교통부, 2002년)

2. 관련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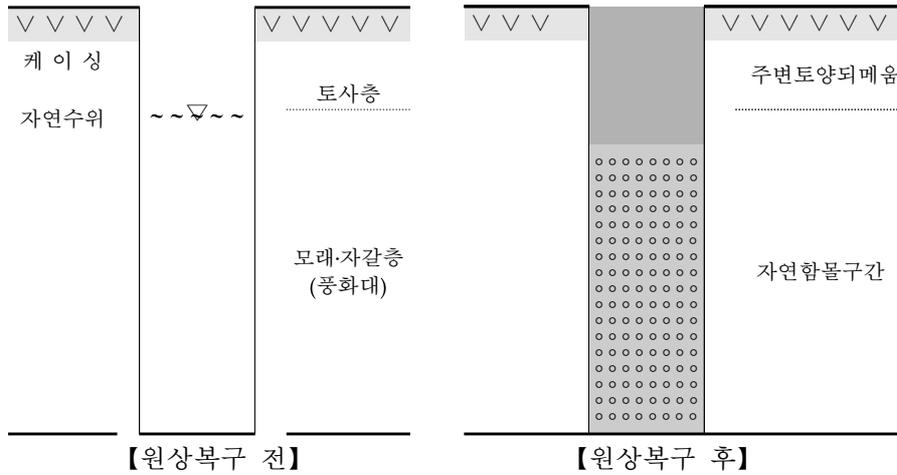
- 폐공의 정의
 - 지층을 굴착한 공(hole) 또는 우물(well)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이용할 계획이 없고, 지하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되어 있는 모든 공
- 원상복구 명령 (지하수법 제15조)
 -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허가·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또는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 소요수량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질 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경우

3. 폐공처리 방안

- 폐공처리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폐공처리, 되메움을 통한 원상 복구, 폐공을 관측정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추조사공의 경우에는 되메움을 통한 원상복구를 수행한다. 시추조사공은 지침서에 의거 소형우물(구경이 100mm 이하인 공)로 분류된다. 소형우물을 대상으로 충적층 및 암반층에서의 되메움을 통한 원상복구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1) 충적층에서의 되메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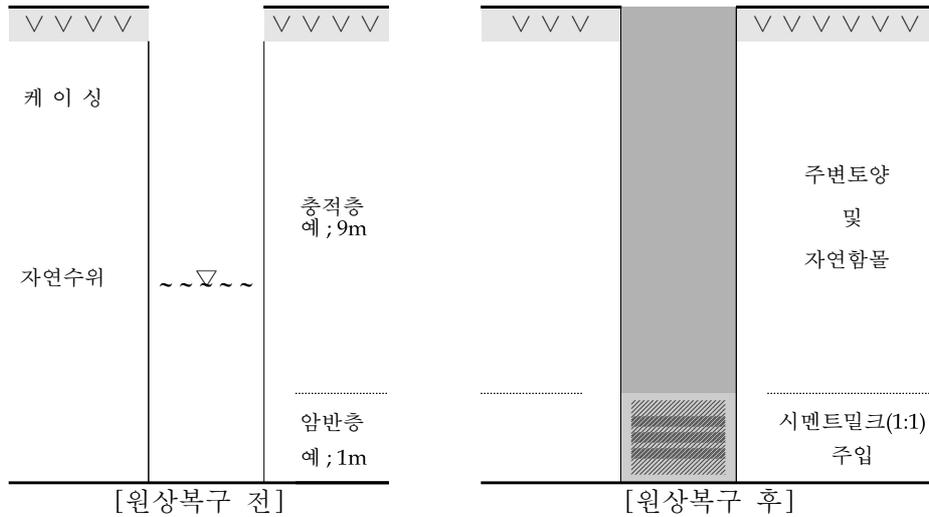
- 총적층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수층이므로 불투수처리를 하지 않고 케이싱을 인발하여 자연스럽게 폐공을 함몰시키거나 주변토양을 이용하여 되메움 한다.



<그림 1> 총적층 원상복구 계획도

(2) 암반층에서의 되메움

- 암반층에서는 불투수성재료(시멘트밀크)를 충전하여 되메움 한다.



<그림 2> 암반층 원상복구 계획도

4. 폐공관리자

- 모든 시추공에 대한 폐공처리 및 원상복구는 굴착종료 즉시 원인자가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원인자가 적극 대처한다.

별첨 3. 지반조사 계획서

지반조사계획서

1. 과 업 명

-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기본설계 용역

2. 과업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 주변

3. 과업기간

- 2020년 06월 ~ 2021년 06월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5. 설계용역사

- (주)건화

6. 지반조사 수행업체(분담)

- (주)테크피아

7. 지반조사(시추)의 내용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램프 설치 기본설계 용역”에 따른 것으로, 구조물 구간에 지반조사(시추)를 실시하여 지층상태, 토질특성 및 지반의 지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 및 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조사방법

시추조사는 직접적으로 기초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조사방법

으로서, 시추공에서 채취된 시료를 분석하여 색상, 구성토질, 습윤정도, 상대밀도, 풍화정도에 관한 육안관찰, 시추시의 굴진속도, 코아채취율 등의 굴진조건을 고려하여 시추주상도를 작성하며, 표토의 깊이, 암반의 풍화 및 지지층의 위치 등 기초지반의 특성을 파악하고 채취된 시료로 제반시험을 실시하여 기초지반의 성질을 판단한다.

본 시추에서는 지반교란이 적고, 코어채취가 가능한 회전수세식 시추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시추공경은 NX Size(외경 $\phi 76.0\text{mm}$)로 시추한다.

공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견고한 층까지 Casing을 삽입하며, 시추완료 후 Casing은 인양한다.

채취된 코아는 코아상자에 잘 정돈하여 위치 및 심도를 표시한 상태로 보관하며, 시추작업 중에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은 야장에 기록한다.

또한, 시추완료 직후 및 24시간 이상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수위정보를 파악하며,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시추조사 사진 예

별첨 4. 사업자등록증 및
지하수이용시공업등록증

제성남 2013-1호			
지하수개발 · 이용시공업 등록증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주)테크피아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경우성명)	한기태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131111-0347095
	주된사무소의소재지 (개인인경우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B동 1004호 (삼평동, 판교이노밸리) (전화번호:031-8018-0559)	
등록 조건		지하수 관계법규 준수	
등록연월일		2013-09-12	
<p>「지하수법」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3년 09월 1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남시장</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30302-15211 일
'97.7.9 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첨 5. 하천점용 허가증
